

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1. 6. 9.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
- 발의자: 원종진 의원 등 5명(조복희, 김기열, 배용식, 안영란)
- 발의일자: 2021. 5. 20.
- 회부일자: 2021. 5. 28.
- 상정 및 의결: 제280회 달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1. 6. 9.)

2. 제안이유

- 본 조례는 달서구 보증채무의 기재내용 등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근거 규정이 없고, 보증채무의 절차와 기재내용에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」를 폐지함.

4. 참고사항

- 현행조례: 불임 참조
-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1. 5. 20. ~ 5. 31.)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이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고, 조례의 주요내용인 보증채무의 절차와 기재내용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증채무 관련 사항은 상위법령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 바, 본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6. 질의 · 답변 및 토론 요지

- 1988년 본 조례 제정 후 이 조례에 의한 보증채무 관련 실무가 한 건도 없었고, 세부내용까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- 이렇게 유명무실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조례의 경우 바르게 정리 될 수 있도록 다른 기존 조례들도 세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.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